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유치문제

이진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증진, 인프라 확충, 세수증진 등의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유치를 실질적인 업적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지방세감면, 고용지원, 국공유지 임료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조건을 걸고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 및 열차, 버스, 신문, 잡지광고, 영상광고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도 공통적으로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광고 선전 문구가 시도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눈에 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과 안보논리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의 투자유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고용과 세수, 인프라 확충은 인구유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예산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투자유치담당을 업무로 하는 국제협력관 또는 투자증진담당관,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투자유치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적절한 국제투자는 국가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획 될 수 있고 기술집약적 산업의 유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기간시설의 재원조달, 산업단지공단의 개발과 활성화는 재정책확과 더불어 인구유입등의 부수적 효과도 크다. 결국 자주재원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위하여 각종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환상적이지만은 않다.

투자자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투자자 예정보다 줄거나, 고용과 세수 등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거나 공해유발, 질 낮은 고용문제, 근로형태의 문제, 그리고 부도 등의 문제발생시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하고 이를 위한 보완적이거나 보대체할 수 있는 대비, 전문성 부족과 투자자의 검증능력이 부족한 것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준비도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II.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1.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위상과 법률상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국제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은 같은 법 제9조와 제11조는 지방자치체의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¹⁾ 중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관련한 내용²⁾을 살펴보면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이익을 위한 투자항

- 1) 위 제9조에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것이라는 주장(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 유치와 투자분쟁, 국제법학회 제55권 제2호 103면, 2010.)과 열거주의에 따른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시규정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 2) 지방자치법제9조에 나열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중 외국인투자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자. 공유재산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비 및 운영
 3. 농업·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사. 공유림 관리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 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및 투자대상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다.³⁾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유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투자유치활동은 법률상 정당한 사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상의 권한은 제117조에 정하고 있는 바,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투자자의 의의

(1) 양자간 협정(BIT)

투자자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하여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주체이다.⁴⁾ 투자자는 사적인 주체이며, 투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한다.⁵⁾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에서 투자의 주체는 자연인과 자연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국민과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⁶⁾ 자연인은 체결국의 국민일 것과 국적요건에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일정한 관련성을 요구하는 경우와 국민의 경우 당사국에 거주하는 자를 국민으로 정하는 경우이다.⁷⁾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 자연보호활동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제도사업의 경영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이재민, 국제법학논총, 제55권 제2호. 2010, 6. 104면.

4) 법무부, 투자자·국가소송(ISD)최신 판정분석, 2014. 4. 112면.,

5) 박덕영외13,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년, 74면.

6) 법무부, 위 책, 112면.

반면 법인의 경우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설립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97년 그리스와 쿠바 사이의 BIT 제1조는 “본 협정상 투자자란 계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중국적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경우 미국의 2012년 Model BIT 제1조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상대방 계약국에 투자를 시도하거나 진행중인 또는 완료한 일방 계약국, 국영기업, 개인이나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에 대하여는 지배적이고 실효적인 국적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스리랑카 Model BIT는 “일방계약국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국적을 갖되 상대국의 국민이 아닌 자연인(antural persons who have the nationality of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are not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이라고 하여 상대국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를 투자자의 정의에서 배제하고 있다.⁸⁾

(2) 다자간협정

다자간협정에서 투자자의 정의는 “적용 가능한 계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자연인 또는 해당계약국에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 혹은 기타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NAFTA는 제1139조 정의조항에서 “투자란 상대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진행중인 또는 투자를 완료한 일방계약국 또는 일방계약국의 국영기업, 개인 또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고 ASEAN 협정은 ‘국민’을 개별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고, ‘법인’은 실효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계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된 기업, 혹은 기타여업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법인이 경우 위 외에도 즉, 설립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외에도 법인의 주된영업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¹⁰⁾, 법인의 설립지와 주된영업소재지를 혼용하는 경우¹¹⁾, 그 외의 기준

7) 법무부, 위 책, 112면, 2006년 미국과 우루과이 BIT에서 “본 협정상 자연인이란, i) 미국의 이민, 국적법 제3조에 따른 미국국적을 보유한 자, ii) 우루과이 국내법에 따라 우루과이 시민권을 보유한 자”라고 정의하여 국적요건과 국가와 개인사이의 일정한 관련성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974년 독일과 이스라엘 사이의 BIT에서는 “본 협정상 이스라엘 국민이란 이스라엘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국적외에도 계속적인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8) 법무부, 위 책, 113면.

9) 법무부, 위 책, 113면.

10) 아르헨티나-독일의 BIT, '기업'을 당사국의 영토내에 주된 영업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1) 벨기에-체코, 파키스탄-스웨덴, ASEAN agreement 등이 법인설립지와 주된 영업소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을 사용하는 경우¹²⁾등이 있다.

3. 투자의 유형

(1)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는 ①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②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대부하여 주는 경우 ③ 외국에서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해외자원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④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지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직접투자는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등이 수반된다.

(2) 간접투자는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식, 장기 및 단기 채권, 단기의 예금투자 등 주로 금융산업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룬다.

위와 같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¹³⁾

12) 리투아니아-스웨덴 BIT서는 투자자이 우세한 이익과 주된 영업소제지를 혼용하기도 하고, 이란-스위스 BIT는 법인의 설립지, 법인이 주된 영어소재지, 법인의 설립지와 주된 영업소제지 모두 적용하는 사례이다. 박덕영외13, 위의 책 79-80면.

13)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중 외환은행을 론스타자본이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벨기에에 설립한 회사가 인수하였고 이후 하나은행의 지주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론스타의 벨기에 소재 자회사와는 금융자본인가 산업자본인가의 문제로 현재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고 론스타가 투자한 벨기에 회사는 46억,7900만달러(약5조1000억원)의 ISD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012. 11.제소하였고 2015. 5. 심리가 개시되었다.2015. 5. 심리대상은 한국정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승인 고의지연부분이고 2015. 6. 심리는 스타타워빌딩 매각과 관련한 8,500억원의 과세부당 사건의 심리이다) 이러한 경우 론스타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소재 계열 8개 법인이 실질적인 법인인지 투기자본은 아닌지, 산업자본은 아닌지의 문제와 한국정부가 론스타를 HSBC에 매각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것인데 매각승인지연이 고적이고 부당한 지연인지,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론스타의 대한민국내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부당한 8,500억원의 세금부과가 정당한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인데 대한민국정부의 주장은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법원에 소송계류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매각승인지연은 아니라는 주장이고 세금부과와 관련하여는 투자협정이 체결된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질적인 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한 과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의 적용을 이유로 매각승인절차지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WTO분쟁의 분쟁해결원칙은 당사국의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위반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

III.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분쟁의 유형

1. 양자협정 및 FTA상의 '조치'

양자협정이나 FTA협정상 '조치'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조치'가 분쟁과 어떤관계가 있는가? 한국과 미국의 FTA협정 제1장 제1절 1.4조 정의에서 조치라함은 '모든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포함한다는 의미는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뿐만 아니라 그 외의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나 그와 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 '모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장에서 '모든' 이후에 표현되는 의미인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이라는 예시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조약에서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상의 '조치'라는 정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투자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정책, 조례, 내규 등은 모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WTO 항소기구에 의하면 당사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작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¹⁴⁾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해석도 있다. 즉, 한-미 FTA협정문 제1장 제1절 1.4조 정의에서 중앙정부에 관한 정의만 있을 뿐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의가 없으므로 위 한-미 FTA협정에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조치'의 국가행위 귀속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논의여지는 없어보인다.

2. '조치'의 국가행위 귀속

국제법리에 이하면 모든 국가기관의 직무상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며 이러한 행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¹⁵⁾ 미국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간의 보조금교부를 원인으로 한 쌍방제소분쟁 사건에서 미국이 유럽연합을 제소한 분쟁의 판정에서는 유럽연합 소속의 국가들의 지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교부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교부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판정이 있었다.¹⁶⁾ 이는 2001년 한국가책임협약 제 4조를 통상법에

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응 논리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4) 이재민, 위 논문 115면.

15) 이재민, 최근WTO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논총 제55권 제4호. 2010. 12.199면.

16) 이재민, 위 논문 200면.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개별국가들은 통상분쟁에 있어 국가의 귀속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상대교역국의 통상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키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분쟁해결기구들은 일관되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국가투자기관에 대한 책임을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키는 판정을 하고 있다.¹⁷⁾

IV.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IT, FTA협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위와 조치는 2001년 한국가책임협약에 의하여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키는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가가 투자한 국가투자기관이나 국가기관¹⁸⁾은 투자유치의 장점만을 부각하거나 긍정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사전에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파격적인 유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만의 능력으로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에도 사전협이나 승인없이 투자유치를 한 후 이행을 하지 못하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절대농지를 부지로 개발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조건, 그린벨트의 해제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만의 단독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들임에도 무리한 유치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지향할 일이다. 또한 기존의 다른 투자자와의 사이에 나타나는 형평성문제¹⁹⁾, 투자유치 이후의 문제로 환경, 보건, 위생, 안전관리정책과 절차를 평가하는 절대적 효과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후 투자자와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17) U.S-Zeroing(Japan) 21.5사건, 미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사건으로 미국은 전계사건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분쟁해결절차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Zeroing조치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소된 사건이다. 미국은 일본상품의 반덤핑판정에 따른 반덤핑 관세부과는 합리적 이행기간 이전에 이루어 졌고 실제 반덤핑관세의 최종청산은 합리적인 기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 제로잉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합리적인 기간 이후에 WTO 판정에 반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미국 WTO의 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WTO 항소기구는 관세기구의 구가기관의 행위도 국가귀속책임으로 인정하고 제로잉 조치가 후속 행정 절차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18) 국가기관은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즉 행정부는 법무부가 국가소송을 하나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투자분쟁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19) 이재민, 위 논문, 118면. 이를 상대적인 효과라고 한다.

된다. 상대적 효과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위반의 문제로 절대적 효과와 관련하여는 간접 수용, 의무이행부과금지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1. 최혜국대우의 문제

투자유치를 위한 개별 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조건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같은 투자자로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투자자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제소당할 우려가 있다 즉,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의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귀속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2. 내국민대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는 내국민대우를 위반하게 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처분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을 위반하여 내국민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결국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

그러나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업체를 우대하거나 일정한 자격등의 조건을 우대하는 것이 내국민대우 위반인지의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

3. 간접수용

투자유치를 한 후 정당한 보상이나 배상 등의 제공없이 부당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간접수용의 유형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투자자만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에 대한 혜택, 또는 일부 투자자에게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보조금이나 감면등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 모두 간접수용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원칙

투자를 허용하거나 사업진출을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로 투자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투자유치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다. 자원이나 노동력을 보유한 저개발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들로 투자조건이 제시되지 않아도 유리한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무능과 부패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민원이나 환경 등의 문제를 이유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도 협정위반이 되어 제소당할 수 있다.

V.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1. 국제적 감각과 국제법적 이해부족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유치를 위한 조건만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이행방안이나 국제적인 관례 및 국제법관계, 투자유치 이후의 이행문제에 관한 검토와 사전검토 등은 부족하다.

국제관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전제된 투자유치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2. 분쟁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부족

지방자치단체의 분쟁가능성에 관한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정보교류 등이 많지는 데 있다. 우리가 이미 겪은 문제로 용인경전철의 문제는 이미 사례를 통하여 많은 실패사례로 연구가 된 바 있다. 계약상의 문제부터 중앙정부를 배제한 채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한 후 수익성,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지 못한 결과로 투자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문제를 통하여 중앙정부와의 사전교류와 조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사건이다.

3. 국제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분쟁절차에서의 대응력이 부족하고 대응논리도 부족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분쟁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상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없어 지속적인 교육과 이해증진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유치전략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유치전략은 분쟁의 소재를 처음부터 노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VI. 결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려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무리한 유치전략, 잘못된 인식 등의 문제로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이후의 분쟁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전략은 반드시 새로 점검을 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유치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토지가격, 교통 등의 인프라, 소비와 생산지의 연결문제 등 모두 면밀하게 살펴 장점을 홍보하고 약점을 상쇄할 조건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며 새로운 교통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장기적인 계획 검토단계를 끝 이루어질 것인양 과대하는 등은 지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박덕영외13공저,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박덕영, 국제법 기본조약집, 박영사, 2012.
외교통상부, 한미·FTA협정문.
지식경제부, 투자자·국가간 분쟁사례로 본 국제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연구, 2009
법무부, 한미 FTA 투자분야연구, 2008.
법무부,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 유치와 투자분쟁”, 국제법논총, 제55권 제2호.
최근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논총, 제55권 제4호.
서철원, “ICSID협약상 투자의 의미”, 국제법논총, 제55권 제2호.